

광주지방법원 2022. 1. 20 선고 2020가합5921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

담당변호사 김철

피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현길환

변론 종결2021. 11. 25.

판결 선고2022. 1. 20.

주 문

1.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권리에 관하여 체결된 2020. 2. 3.자 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청 2020. 2. 3. 접수 C로 마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특허권, 특허청 2020. 2. 3. 접수 D로 마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디자인권에 관한 각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채권

1) 원고는 주식회사 B(이하 'B'라 한다)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의 각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B가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은행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각 보증을 하되, 원고가 B를 대신하여 은행에 각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, B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소정의 이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도 지급하기로 하였다.

2)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.

1	2013. 11. 22.	255,000,000) 이 사건 순번 1번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을 연장하거나 보증원금을 감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6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, 2019. 11. 12.경 체결된 6차 변경계약에서 보증기한은 2020. 11. 13.로 연장되고, 최종 보증원금은 232,000,000원으로 감액되었다.	E은행	2013. 11. 29.	232,000,000
2	2015. 8. 18.	255,000,000	F은행	2015. 8. 18.	255,000,000

3) B는 2020. 4. 7., 2020. 4. 21. 위 각 E은행, F은행에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. 이에 원고는 2020. 8. 24.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39,019,330원, F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60,428,155원을 각 대위변제 하였고, 원고는 위

대위변제 이후 B로부터 875,240원을 회수하였다.

4) B가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9,119,460원이고, 원고가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은 2,041,790원이다.

나. 처분행위

B는 2020. 2. 3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, 디자인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'이 사건 각 양도계약'이라 한다), B는 같은 날 각 권리에 관한 이전등록을 각각 마쳤다.

다. 채무자의 재산상태

이 사건 각 양도계약 당시 B는 채무초과상태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2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,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를 근거로 하여 채권이 발행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).

기초사실에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, 즉 비록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생한 것이나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체결 당시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, B는 2020. 4. 7.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는데 B는 그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2020. 2. 3. 피고와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,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

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

갑 제1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B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면,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권리를 제외한 적극재산의 규모보다 소극재산의 규모가 더 큰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B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.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체결은 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권리를 2년간 매월 200만 원씩 B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수한 것으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.

살피건대,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의 전 대표이사 G의 배우자인 H의 계좌로 2020. 3.경부터 2020. 9.경까지 월 200만 원씩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, 갑 제24호증의 기재, 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별지 목록 기재 각 권리 양도대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않고 B의 전 대표이사 G의 배우자인 H의 계좌로 지급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,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, 피고가 주장하는 양수대금도 일부만 지급된 점, 피고의 대표 J은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의 경제 사정 등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체결로 B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,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라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

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권리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할

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신봉메

판사류봉근

판사김대현

별지

1) 이 사건 순번 1번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을 연장하거나 보증원금을 감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6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, 2019. 11. 12.경 체결된 6차 변경계약에서 보증기한은 2020. 11. 13.로 연장되고, 최종 보증원금은 232,000,000원으로 감액되었다.